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금융투자회사 내부규정 적용 안내문

(2014.6.20., 금융투자협회)

- I. (근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안내서”가 관련 근거입니다.
- II. (개요) 금융투자협회는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하 ‘IT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III. (권고사항) 금융투자회사는 “IT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부 규정에 자율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는 내부규정의 적용대상을 다음 사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내부규정 반영기준 〉

- 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6항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만 적용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규정 최초 시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운영되고 있는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무나 제약을 부담하지 않게 적용

(예)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설립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코스콤 및 해외본점 등에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위탁사항을 인·허가 받은 경우 등

③ 금융투자회사는 “IT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금융이용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목적을 고려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적용

④ 금융투자회사는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안내서*(2013.12, 금융위원회)”를 참고하여 적용

* II. 국외위탁 제한설비의 범위 중 “위탁회사가 (가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리스크 관리지침을 준수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판단”

IV. (내부 규정화 방법) 금융투자회사는 “IT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규정 등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은 회원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존속 기한) “IT위탁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재검토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정보시스템부